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883호 2012. 4. 2.(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2-1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2-1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변경 고시 ----- 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396호 201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시행공고 ----- 6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405호 입법예고문 ----- 7

회 람								
--------	--	--	--	--	--	--	--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2 - 1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623번길 41외 3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2012.03.26.)

(2012.03.26.)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마전동 마전지구 10블럭 1-2로트	인천광역시 서구 경단로623번길 41	2008-12-31	경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 서구 마전동 마전지구 10블럭 1-1로트	인천광역시 서구 경단로623번길 41-1	2008-12-31	경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 서구 불로지구 14블럭 3로트	인천광역시 서구 경단로763번안길 3-1	2008-12-31	경단로723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된 도로	
4	인천 서구 불로지구 14블럭 3로트	인천광역시 서구 경단로763번안길 3-1	2008-12-31	경단로723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된 도로	
5	인천 서구 검암동 502-3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 42	2009-09-22	검암동의 동명을 따서 명명	
6	인천 서구 검암동 493-3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39번길 30-8	2009-09-22	검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검암동 494-1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93번길 30-4	2008-12-31	검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 서구 공촌동 307-1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694번길 3	2009-09-22	경명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 서구 경서동 766-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14번길 33	2009-09-22	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 서구 경서동 743-1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45번길 8-7	2009-09-22	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 서구 마전동 마전지구 5블럭 2-1로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5번길 15	2008-12-31	마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 서구 가좌동 178-150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38-4	2009-09-22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 서구 왕길동 107-13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268	2009-07-10	축곶 봉수지역과 백석 봉수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로 옛지명 부여	
14	인천 서구 왕길동 107-11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270	2009-07-10	축곶 봉수지역과 백석 봉수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로 옛지명 부여	
15	인천 서구 왕길동 154번지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372	2009-07-10	축곶 봉수지역과 백석 봉수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로 옛지명 부여	
16	인천 서구 금곡동 278-24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568번길 1-1	2009-09-22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 서구 검암동 621-10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06번안길 19-39	2009-09-22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 서구 검암동 623-1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06번안길 31-6	2009-09-22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인천 서구 연희동 793-13(청라지구 c14-1블럭)	인천광역시 서구 에메랄드로 78	2011-11-11	경관특성화계획에 의거 에메랄드존에서 착안	
20	인천 서구 경서동 774-2	인천광역시 서구 에메랄드로133번길 9	2011-11-11	에메랄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인천 서구 경단2지구 65블럭 3로트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117번길 57	2008-12-31	원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	인천 서구 마전동 경단2지구 18블럭 4-3로트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156번안길 15-14	2008-12-31	원정로156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된 도로	
23	인천 서구 마전동 경단2지구 56블럭 2-1로트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45번길 28	2008-12-31	원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인천 서구 마전동 경단2지구 56블럭 2-2로트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45번길 30	2008-12-31	원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	인천 서구 마전동 경단2지구 39블럭 2-4로트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37	2008-12-31	옛 조상들의 우주관 산물인 '단'이 '당'으로 변천하여 으뜸이 되는 단이란 뜻으로 옛지명 부여	
26	인천 서구 원당동 811-7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19번길 3-1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1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7	인천 서구 당하동 1026-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20번2길 31-4	2008-12-31	원당대로820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된 두번째 도로	
28	인천 서구 당하동 1026-1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20번길 30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2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9	인천 서구 연희동 809-1	인천광역시 서구 라임로 10	2011-11-11	경관특성화 계획에 의거 에메랄드존지역의 yellow-green 색상에서 착안	초은중학교
30	인천 서구 연희동 773-1	인천광역시 서구 라임로106번길 27	2011-11-11	라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1	인천 서구 경서동 765-2	인천광역시 서구 라임로138번길 4-4	2011-11-11	라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2012.03.26.)

(2012.03.26.)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32	인천 서구 연희동 803-5	인천광역시 서구 라임로16번길 24	2011-11-11	라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3	인천 서구 경서동 850-11	인천광역시 서구 루비로134번길 6-3	2011-11-11	루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4	인천 서구 경서동 850-4	인천광역시 서구 루비로134번길 6-6	2011-11-11	루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5	인천 서구 당하지구 29블럭 1-1로트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58	2008-12-31	'청마'라는 자연부락이름 반영	
36	인천 서구 당하동 당하지구 53블럭 2-2로트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48번길 26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7	인천 서구 물류동 85-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77번길 26-8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8	인천 서구 경서동 974-3	인천광역시 서구 사파이어로140번길 15	2011-11-11	사파이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해원초등학교
39	인천 서구 경서동 547-12	인천광역시 서구 첨단동로 344	2011-11-11	첨단산업단지 조성에서 착안	청라달튼외국인학교
39	인천 서구 석남동 498-1	인천광역시 서구 옷우물로34번길 14	2009-09-22	옷우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2 -1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일 : 2012. 3. 30
2.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기타
3. 고시내용 : 청라동 5개 도로구간(“붙임조서” 참조)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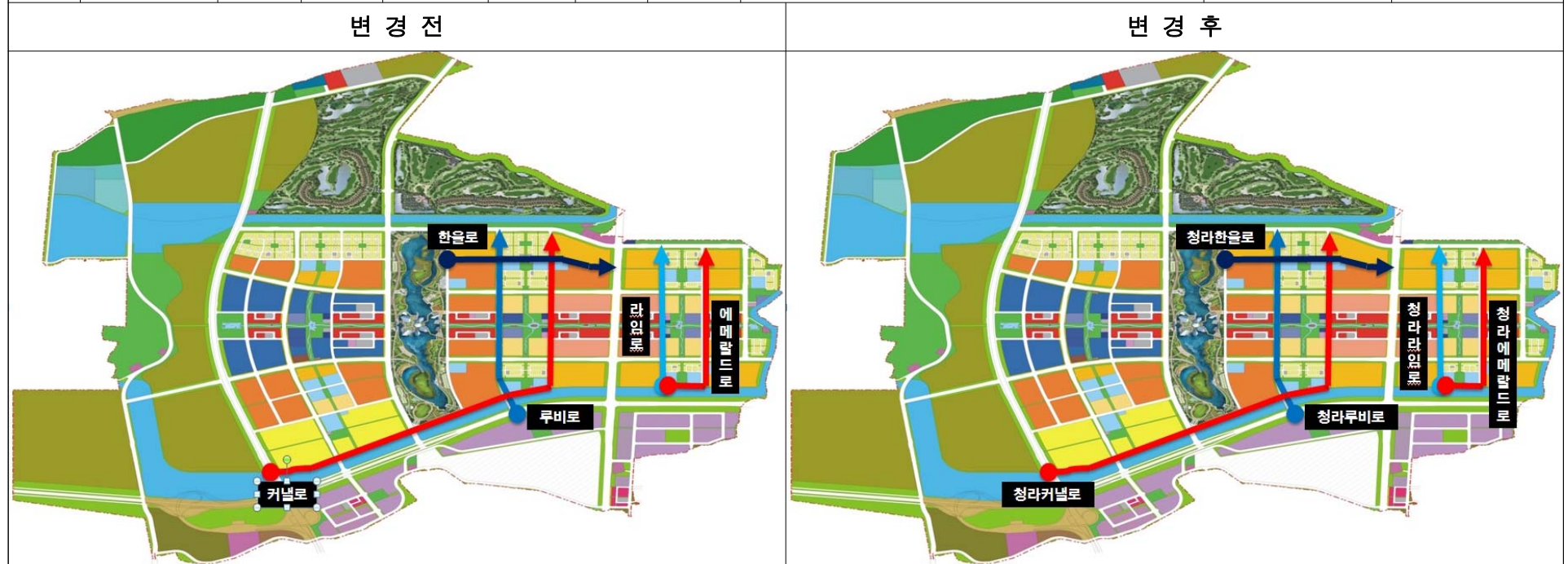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14일 이상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동의 얻은 날로부터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동의 만료일부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결과 통보	

- ※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새주소관리팀 (☎032-560-48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변경조서

도로 위계	관할 행정 구역	도 로 구 간				기초 간격 (m)	변 경 전		변 경 후	
		기점	종점	길이(m)	폭(m)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로	청라동	연희동 678	연희동 767-1~ 776-1	1.7	20	20	에메랄드로	경관특성화계획에 의거 에메랄드존에서 착안	청라에메랄드로	기부여 도로명 은 불분명하고 특색이 없어 "청라" 상징성 을 부여하기 위해
로	청라동	원창동 971-1~ 470-3	경서동 855-2~ 845-1	1.7	27	20	루비로	경관특성화 계획에 의거 루비 존에서 착안	청라루비로	
로	청라동	연희동 678	연희동 762-1~ 7693-1	1.5	20	20	라임로	경관특성화 계획에 의거 에머럴드존지역의 yellow-green 색상에서 착안	청라라임로	
로	청라동	경서동 982-1~ 981-10	경서동 837-2~ 842-2	3.8	17	20	커널로	청라경관구조 계획에 의해 청라중심에 canal 이 있음을 부각시키고자 함	청라커널로	
로	청라동	경서동 857	경서동 837-1	1.2	20	20	한울로	우주, 진실이 가득하라는 의미	청라한울로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396호

201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시행공고

『계량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하여 201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12. 3.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검사대상 및 검사기간

가. 검사대상 : 상거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량기(판수도저울,접시저울 및 판지저울, 전기식저울, 이동식축중기, 눈새김탱크)

나. 검사기간 : 2012. 5. 7. ~ 5. 18.(10일간)

2. 검사일자 및 장소

검 사 일 자	검사시간	검 사 장 소	검사대상 지역
2012. 5. 7(월)	10:00 ~ 16:00	가좌4동 신도상가	가좌4동 지역
2012. 5. 8(화)		가좌2동 사무소	가좌2,3동 지역
2012. 5. 9(수)		가좌1동 사무소	가좌1동 지역
2012. 5. 10(목)		석남2동 사무소	석남2,3동 지역
2012. 5. 11(금)		석남1동 사무소	석남1동,신현원창동 지역
2012. 5. 14(월)		가정1동 사무소	가정1,2,3동, 청라동 지역
2012. 5. 15(화)		연희동 사무소	연희,심곡,공촌,검암,경서,백석동 지역
2012. 5. 16(수)		검단1동사무소	검단1,2동 지역
2012. 5. 17(목)		검단3동 사무소	검단 3,4동 지역
2012. 5. 18(금)		서 구 청	전지역 미수검계량기, 석유통, 분동, 추

- ※ 검사는 날씨와 관계없이 실시하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일정에 수검치 못할 경우에는 기간내 검사일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자는 정기검사의 실시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별도 지정일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정기검사 공고된 장소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등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접수 후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계량에관한법률 제51조의 제1항의 규정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기업지원과(☎560-44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405호

입 법 예 고 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3.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2. 개정이유

- 종전의 구세 감면조례가 2011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감면조례의 개정이 필요
- 또한 전국 공통적인 일부 감면조례의 규정이 「지방세특별제한법」으로 이관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이 2012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 총량의 비율 범위내에서 지방세(구세)의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2조)
 - ⇒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100/100감면
-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3조)
 - ⇒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 및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 면제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제4조)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2호
 - ⇒ 100% 감면 : 사업개일부터 10년차까지
 - ⇒ 50% 감면 : 11년차부터 13년차까지
 -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3호
 - ⇒ 100% 감면 : 취득일부터 10년차까지
 - ⇒ 50% 감면 : 11년차부터 13년차까지
 -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
 - ⇒ 50% 감면 : 사업개일부터 7년차까지
 - ⇒ 30% 감면 : 8년차부터 10년차까지
 -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
 - ⇒ 50% 감면 : 취득일부터 7년차까지
 - ⇒ 30% 감면 : 8년차부터 10년차까지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5조)
 - ① 자동계좌이체 신청 후 실제 납부한 경우
 - ⇒ 고지서 1장당 150원
 - ②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모두 신청 후 실제 납부한 경우
 - ⇒ 고지서 1장당 500원

4.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2년 4월 18일까지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560-420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참고사항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6.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같은 조 제1항제2의2호부터 제2의7호 및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

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같은 조 제1항제2의2호부터 제2의7호 및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제5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구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고 실제 납부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부과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적힌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고, 시세와 구세가 함께 적힌 경우에는 시세에서 우선 공제하며,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지방교육세)은 가장 후순위로 세액을 공제한다.

제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비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다른 법 또는 법령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 감면여부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